

#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
----------	----

제안연월일 : 1998년 7월 14일  
제안자 : 이현영 의원 외 2

## 1. 제안이유

본 조례에 규정된 사무직원의 정수는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어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, 본 조례에 명시된 정수를 삭제하고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규정에 명시된 규정에 의하도록 하기위함.

## 2. 주요골자

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된 사무직원의 정수 16명을 거창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하도록 사무직원의 숫자를 삭제. (안 제3조)

## 3. 개정근거 :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

거창군조례 제 호

##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(사무직원의 정수)중 “사무직원의 정수는 16명으로 하며”를 “사무직원의 정수는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명시한 정수에 의하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 (사무직원의 정수) 의회에 두는 <u>사무직원의 정수는 16명으로</u>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3조 (사무직원의 정수) 의회에 두는 <u>사무직원의 정수는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명시한 정수에 의하고</u> 그 직급별 정원은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.</p>